2016 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 관리운영 및 집행 내역

2016학년도 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 관리운영 및 집행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1. 운영 근거
   가. 「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 관리운영 지침」(체육위원회 심의 의결)
   나. 매년 「체육특기생 식비납입제도 운영 계획안」 및 「체육특기생 식비납입제도」 운영 결과 보고」상신 (위임전결규정에 의거 부총장 전결)

2. 운영방법
   가.「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 관리운영 지침」 준용 (붙임 참조)
   나. 납부대상 : 체육부기숙사에 입사한 체육특기생
   (납입예외: 「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 관리운영 지침」제6조 ②항 참조)
   다. 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은 식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   라. 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으로 인해 절감한 교비 예산은 해당 운동부의 훈련경비, 용품비, 대회출전비 등으로 배정할 수 있음.

3. 2016학년도 체육특기생 식비 및 기숙사 사용료 집행 내역
   가. **체육부 연간 식비 및 기숙사 사용료**

구 분	재 원	수 입	지 출		잔액	비 고
			금 액	비 율		
식 비	교 비		296,653,000	59.5%		
	식비납입금	202,000,000	201,985,030	40.5%	14,370	
	식비 합계		**498,638,030**			
기숙사비	교 비		376,327,000	100%		

   나. **체육특기생 1인당 연간 식비**

종목수	인 원		2016학년도 식비 집행액			1인당 연간 식비		
	선수	지도자	주중식대	주말식대	합 계	주중식대	주말식대	합 계
11	219	18	386,172,000	99,016,030	485,188,030	1,629,418	417,789	**2,047,207**

※ 참고사항
1. 체육부 기숙사 거주 종목 대상으로 산출한 내역임. (빙상부, AT실 제외)
2.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식대는 별도 지원
3. 식비 기준
   - 주중식대 : 1인 1일 14,000원 (체육부기숙사, 조식 ₩4,000, 중·석식 ₩5,000)
   - 주말식사 : 식수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체육부 기숙사, 50명 미만이면 외부식당 이용

4. 2016학년도 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 수입 및 지출내역

연번	부 명	납부 인원	납입금액 ⓐ	주말식비 ⓑ	주중식비 ⓒ	잔액 ⓐ-ⓑ-ⓒ	비 고
1	축 구	29	29,000,000	10,409,400	18,590,000	600	
2	야 구	32	32,000,000	8,310,400	23,689,600	0	
3	농 구	14	14,000,000	9,019,600	4,980,000	400	
4	배 구	15	15,000,000	14,999,420	0	580	
5	핸드볼	17	16,000,000	13,539,300	2,460,000	700	
6	배드민턴	12	12,000,000	7,929,810	4,070,000	190	
7	체 조	11	11,000,000	4,260,000	6,740,000	0	
8	럭 비	32	32,000,000	14,053,300	17,940,000	6,700	
9	태권도	31	31,000,000	11,000,000	20,000,000	0	
10	양 궁	10	10,000,000	5,494,800	4,500,000	5,200	
합 계		**203**	**202,000,000**	**99,016,030**	**102,969,600**	**14,370**	

※ 참고사항

1. 식비 납입금은 전액 식비로 집행
2. 주중식대로 집행함에 따른 교비 절감액은 각 운동부 전지훈련비로 배정
3. 필드하키부는 지도자 부재로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식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나, 2017학년도부터 납부

붙임 : 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 관리운영 지침

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 관리운영 지침

제1조(목적) 본 운영지침은 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체육특기생 식비 납입금은 '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'으로 명칭한다.

제3조(운용) ① 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주관부서는 체육부로 한다.
② 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은 당해 학년도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용도) ① 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은 식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으로 인해 절감한 교비 예산은 해당 운동부의 훈련경비, 용품비, 대회출전비 등으로 배정할 수 있다.

제5조(금액 및 납입방법) 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 액수 및 납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1. 체육특기생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정한다.
2. 체육특기생 운영계좌를 별도로 생성하여 해당계좌로 납부한다.
3. 정해진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가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납을 허용한다.

제6조(납입대상 및 예외) ① 체육부 특별육성지원금 납입대상은 체육부 기숙사에 거주하는 체육특기생으로 한다.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특기생은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.
1. 외국인 체육특기생은 납입을 면제한다.
2.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체육특기생은 체육부 기숙사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.
3. 지도자가 없는 운동부는 납입을 면제할 수 있다.
4. 형제·자매 2인 이상이 체육특기생인 경우에는 각각 50%를 감액한다.
5. 가계가 극히 곤란한 자는 체육부운영소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납입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.

제7조(반환) 납입한 특별육성지원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부장의 결정으로 반환할 수 있다.

제8조(보칙)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부운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본 지침은 201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본 지침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